

신용정보집중관리제도



대부업 신용정보 제재금 설명회 자료

(2015. 5. 29.)

일 러 두 기

- 담당자 외 전달, 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지함(언론 등 대외유출 포함)
- 동 자료의 내용은 수시로 변경되므로 최신규약 및 기준 등을 참고할 것
(동 자료는 업무상 편의 목적의 해설 자료 이므로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른 업무처리 필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번 설명회 목적 외 재가공 및 활용을 금지함



1 집중대상 대부업자

- 금융감독원장의 직권검사대상기관 대부업자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대상)

2 집중대상 신용정보

-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정보, 신용공여정보(사업자에 대한 대출)
 - 개인채무보증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등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등

3 신용정보 공유여부

- 공유하지 않음
 - 단, 대부업 신용정보는 신용조회회사(신용등급 산정 등의 목적으로 한정)에만 제공
 - 대부업 신용정보의 공유전까지 대부업자도 타 업권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없음
 - ※ 본인 정보의 조회 요청시 신용정보조회서에는 대부업정보 미기재. 단, 은행연합회 내방으로 대부업정보의 조회(열람)를 요청시 동 사실을 별도 확인토록 구축



4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

- 신용정보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에 따라 제재금 부과
 - 단, 현재 대부업권은 시행일(3. 30.)이후 3개월간 제재금 부과 배제 기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인 경우 증빙자료 확인 후 3개월간 배제)
 - 오는 6월 30일에 제재금 배제 기간이 일괄 종료되므로, 7월부터 발생하는 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른 제재금 부과 예정

⇒ 제재금 부과 배제기간 종료 이전에 동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혼란 최소화 및 신용정보 정확성 제고 기대

※ 본 자료는 「신용정보 제재금 부과기준」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것이므로, 실제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동 기준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용정보 제재금 이란?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제공시 누락 및 지연, 거짓등록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그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세부 기준과 절차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장이 정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제1항제2호,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 상기 세부기준 및 절차가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이며, 동 기준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www.kfb.or.kr) > 신용정보업무 > 관련법규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함(반드시 다운로드 및 숙지 요망)
- 제재금은 신용정보 관련 연구, 세미나 개최, 신용정보 교재 발간 등에 사용

2 집중기한

- 신용거래정보 및 신용도판단정보 :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기업신용공여정보 등
 - 대상기업체정보(CH9011) :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 일일여신(DY9011) :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말일자 일일여신 5영업일) 이내
 - 월말여신(MN9011) :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 기업어음거래정보(CP9011) :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3 제재금 부과 유형

- 지연 : 신용정보 정확 + 자발적 집중 + 집중기한 경과
- 누락 : 신용정보 정확 + 비자발적 집중 + 집중기한 경과
 - ※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이나 감독당국의 확인 등에 의해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 제재금이 가중되므로, 오류 발생 즉시 정정할 것
- 등록내용의 부정확 : 사유발생일, 등록금액 등 오류
 - ① 등록금액 부정확에서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가 되는 경우 제외
 - ② 사유발생일의 부정확은 지연, 누락, 고의·부적절로 분류
- 고의·부적절
 - ① 고의적으로 지연, 누락 처리
 - ② 누락 등의 미처리 사실이 확인·안내되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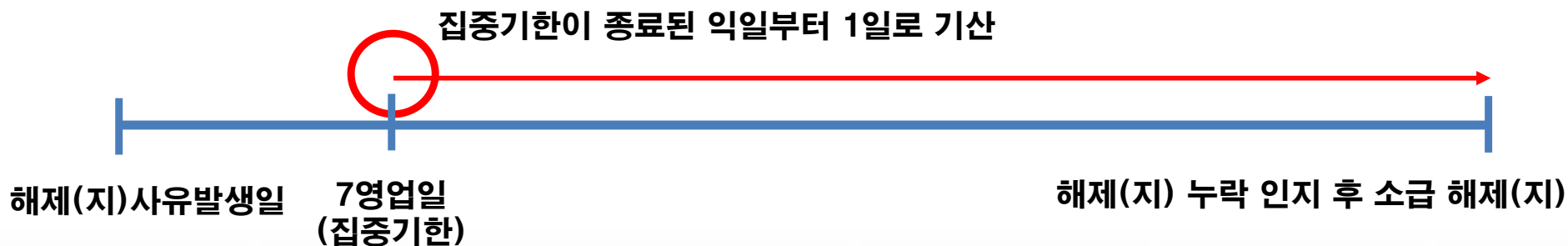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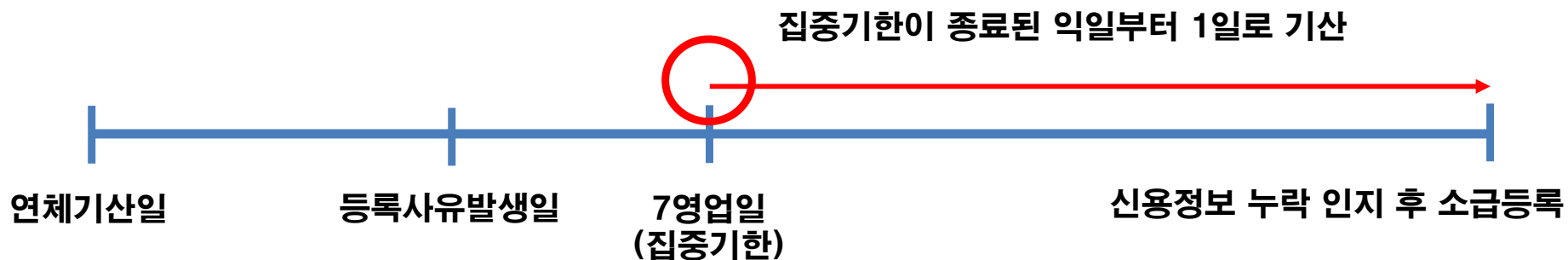


1 제재금 세부 부과기준

구분	부과대상		지연일수	제재금
지연	- 당좌(가계당좌) 개설정보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정보 - 개인대출정보, 카드로론정보 현금서비스정보 - 연체 등 정보		30일 이내	2만원
			90일 이내	4만원
			180일 이내	6만원
			180일 초과	8만원
	- 일일여신, 월말여신 등록 -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별첨 참조	
누락	- 당좌(가계당좌) 개설정보 - 신용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정보 - 개인대출정보, 카드로론정보 현금서비스정보 - 연체 등 정보		30일 이내	4만원
			90일 이내	6만원
			180일 이내	8만원
			180일 초과	10만원
	- 신용공여정보 - 기업어음거래정보 - 대상기업체정보		별첨 참조	
부정확	등록내용의 부정확	- 신용공여정보	별첨 참조	
		- 기타정보의 등록금액 오류	2만원	
	고의·부적절		100만원	



1 제재금 세부 부과기준





1 제재금 세부 부과기준

- 제재금 심사원칙



신용정보 등록 및 해지(제)누락	→	정보 등록 및 해지(제)
등록되서는 안되는 정보 착오등록	→	등록 취소(해제코드 : 77)
해지(제)해서는 안되는 정보 해지(제)	→	기록보존기간이라면 해제취소하고, 삭제되었다면 소급재등록 후 신용정보회사에 안내
등록금액, 계좌번호, 사유발생일 등에 잘못된 정보 입력	→	발견 즉시 정정

- ① 자발적으로 처리하여 제재금 발생 → 지연 제재금
- ②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예정부과 및 정정안내를 받아 처리 → 누락 제재금
- ③ 등록금액 오류를 정정한 경우 → 등록 내용의 부정확 제재금
- ④ 정정안내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이 미조치 하거나 고의로 지연, 누락으로 처리하는 경우 → 고의·부적절 제재금



1 제재금 세부 부과기준

- 부정확한 신용정보의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용정보 처리의 중복 등은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공문으로 안내 필요
ex) 기해제(기록보존기간도 종료)되어 연합회에 남아 있지 않은 정보이나, 해제 날짜를 잘못 입력(일반적으로 정확한 해제일 이후에 해제)하여 신용정보정보 주체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 등
- 동일 주체인 경우에도 등록, 해지, 해제별로 각각 제재금 부과 단, 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정비하는 과정에서 복수의 제재금이 적용되는 경우 큰 금액의 제재금만을 부과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새롭게 신용정보 제공·이용기관에 포함된 A기관이 신용정보를 집중하던 도중, 규약 숙지 미흡 등의 사유로 기집중한 정보를 일괄 정비(기등록정보 해지(제), 등록금액 정정 등)한 경우

- 신규 가입, 파업, 파산 및 청산 등이 발생한 경우

배제내용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규로 가입한 기관인 경우 - 직원의 파업 등으로 인하여 신용정보 집중이 불가능한 경우 - 해당 금융기관이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파산, 해산 등에 해당되는 경우 등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신규가입 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 후 3개월 이내 조치 건에 한하여 배제 - 파업 등의 경우 쟁의신고사실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확인후 쟁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조치하면 배제 - 영업정지 등 사실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확인 후 배제

⇒ 대부업권의 경우 동 기준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 시행(3. 30.)을 기준으로 3개월간 제재금을 배제하며, 7월부터 발생하는 제재금은 다른 업권과 동일하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심사 후 부과 예정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신용정보 대량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던 중 신용정보 처리의 결함(해제되어서는 안되는 정보가 해지되는 등)이 발견되어 파악한 결과, 시스템 개발 중에 오류로 인하여 문제가 벌어진 경우

-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배제내용	- 신규 시스템 구축, 하드웨어 증설, 프로그램 개발·변경이 있었고, 이로 인해 제재금이 발생하는 경우 - 온라인 전송 시 통신장애로 인하여 정보가 일부만 전송되거나, 불완전하게 전송된 경우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전산 시스템구축, 프로그램 개발·변경 관련 내부 공문 등의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하며, 변경사항 적용일 또는 장애발생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조치할 경우 배제 - 해당일자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발송한 전산파일 등 증빙자료 확인 후 배제(동 파일로 신용정보주체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함) ※ 등록정보에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날이 적용일 등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때에는 알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조치(단, 적용일로 부터 최장 1년내로 제한, 신용공여정보는 해당 없음)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A기관의 담당자가 신용도판단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한(7영업일 이내)에 집중하였으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는 각종 사유로 인한 오류 통보 → 오류를 확인하지 못하여 신용정보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오류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재포한 신용정보 온라인 ·파일전송 설계서 참조

- 오류 통보

배제내용	- 신용정보 등록(기한내 집중)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오류 통보된 건을 재등록한 경우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신용정보 집중 시의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전산 로그기록, 오류 내역 확인 후 오류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되었다면 배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1) A기관 담당자가 신용정보주체 B에 대한 개인대출정보를 등록했으나, 차후에 알아보니 B는 법원으로 부터 파산면책결정을 받았고 동 결정에 A기관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어 대출정보를 삭제 처리한 경우

예시 2) 신용정보주체 B가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신용회복지원 확정을 받아 A기관에서 기등록한 신용도판단정보가 해제되었으나, 향후 신용회복지원이 실효되었다는 통지를 신용회복위원회로 부터 통보 받아 신용도판단정보를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한 경우

예시 3) 신용정보주체 B가 법원으로 부터 회생인가를 받고 A기관에서 기등록한 신용도 판단정보가 해제된 후, 향후 성실하게 회생계획에 임하여 회생면책 판결까지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기등록되어 있던 대출정보를 면책일로 소급해서 해지하는 경우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

배제내용	[공통사항] - 파산면책결정일, 회생인가결정일, 신용회복지원확정일 이후 착오 등록한 신용정보를 인지하는 시점에 착오등록 삭제(등록취소 '77)한 경우 - 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결정, 신용회복지원확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 등 정보는 해제하였으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된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지 않아 동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파산면책결정일자, 회생인가일자, 신용회복지원확정일자로 소급 해제한 경우 - 파산면책취소, 회생인가폐지, 신용회복지원 실효에 따라 신용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하는 경우 [회생인가] - 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일괄 해제된 연체 등 정보중 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은 연체 등 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하는 경우 - 회생계획에 인가결정에 따른 이행완료로 면책되어 대출정보와 채무보증 정보를 면책일로 소급하여 해지한 경우 [신용회복지원] - 지원확정에 따라 일괄해제된 연체 등 정보중 협약 미가입기관이거나 대상채권에 포함되지 않아 연체 등 정보를 당초 등록사유발생일로 소급 등록하는 경우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법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확인 서류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A(양도기관)와 B(양수기관)의 양수도 계약을 통해 채권이 대량으로 이동하게 되어 A기관은 기등록되어 있던 신용정보를 일괄 해제(지)하고, B기관은 신용정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 채권의 양수도

배제내용	- 양수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당초사유 발생일로 소급 등록하거나 양도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소급하여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 양수도 취소 효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양수 취소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등록취소('77')하거나 양도 취소한 채권의 신용정보를 당초 등록 사유 발생일로 소급 재등록한 경우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채권양수도계약서, 양수도 취소 공문, 해당 채권 명세 등 증빙서류 확인 후, 양수도 효력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조치한 건에 한하여 배제

※ 채권의 양수도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양도기관은 기등록되어 있던 대출정보는 해지하고, 신용도판단정보는 채권을 양수받는 기관의 성격에 따라 16(비금융기관), 17(금융기관) 해제코드를 입력하여 해제함
- 양수기관은 양도기관에 등록되어 있던 정보의 당초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등록함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A기관이 B기관을 흡수 합병하여 B기관에 있던 모든 정보가 A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

- 합병

배제내용	- 합병 등에 의해 소멸되는 기관의 보유정보를 합병일 등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경우 - 존속기관의 신용정보는 해당되지 아니함
배제조건 및 제출서류	- 합병일 등이 포함된 서류 등 증빙자료

※ 합병 관련 주요 참고사항

- 기관의 합병형태(신설합병, 흡수합병 등),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이관하는가의 여부 등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 형태가 상당 부분 달라지는 바, 합병 이전에는 반드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연락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할 것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금융기관 담당자는 신용정보 주체 A의 정보를 해지 했어야 하는데, B의 정보를 해지 →
향후 그 사실을 인지하고 원래 해지했어야 하는 A의 정보를 정상적으로 해지하고, 해지해서는
안되었던 B의 정보는 재등록

- 착오 해지, 해제, 등록취소(삭제되는 경우 포함), 등록

배제내용	- 담당자가 착오로 등록정보를 해지(제), 삭제하여 재등록한 경우 - 등록금액 ·사유발생일 오류로 인한 신용정보 정정 후 재등록하는 경우 - 착오로 등록대상이 아닌 정보 등록 후 등록 삭제하는 경우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사실관계 확인서류(원장, 상환내역명세 등) 확인 후 오류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조치된 경우 배제 ※ 단, 모니터링을 위한 변동분 정보의 통보주기 단축 전까지는 오류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등록한 경우에도 제재금 배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금융기관 담당자가 금액 단위를 착각하여 500만원 대출자를 50억 대출자로(통합업무시스템의 금액단위는 ‘천원’) 착오 등록하고, 동 사실 인지 즉시 조치하는 경우

- 등록금액 및 사유발생일 오류

배제내용	- 오등록금액과 정상금액의 차이가 100만원 이내(기업신용공여정보 등의 경우 500만원 이내) 또는 정상금액의 10% 이내인 경우 - 개인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연체 등 정보의 등록금액을 오등록하여 정상금액과의 차이가 상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단, 오등록으로 해제와 동시 삭제시에는 상기 내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 실제 사유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집중하였으나 사유발생일을 오등록한 후 정확한 사유발생일로 정정한 경우
배제요건 및 제출서류	- 사실관계 증빙서류(원장, 상환내역명세 등) 확인 후 배제 - 오류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확한 금액으로 정정한 경우 배제 - 원장 확인 후 배제(단, 사유발생일 오류가 기록보존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1개월내 정정한 경우 배제)



2 제재금 부과 배제기준

예시) 대손상각 등의 사유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신용도판단정보를 특수채권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에서 신용정보가 새롭게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용도판단정보를 한번 더 집중함 → 동 사실을 인지하고 착오 등록 삭제

※ ‘연체 등’ 에 의한 관련채권이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경우 관련 ‘연체 등’ 정보를 해제 후 신규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연체 등’ 정보 등록코드 앞에 ‘7’ 을 추가하여 표시

- 특수채권 편입

배제내용	- 특수채권 편입시 연체 등 정보의 사유코드를 정정하지 않고 특수채권 사유 코드로 신규 등록하여 기 등록 연체 등 정보가 존재하거나 기 등록 연체 등 정보가 해제되어 기록보존중인 경우
배제조건 및 제출서류	- 사실관계 증빙서류(필요시 상환내역명세)확인 후 오류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 정보를 착오등록 삭제한 경우 배제



1 업무처리 개요



2 제재금 예정 부과

- 한달 간 발생한 규약위반에 대한 제재금 부과대상 통보 (공문 발송)
- 공문 수령 즉시 은행연합회 송수신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자료(암호화) 수신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통합업무시스템 “파일전송 > 비정규 파일송수신” 기능을 통하여 제재금 리스트 송수신)
- 개별 기관은 예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자료 (공문, 이의신청 내역서, 입증자료) 를 작성하여 파일을 송수신 담당자에게 제출



3 이의 신청

- 예정부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 공문, 이의신청내역서, 입증자료 를 작성하여 송수신 담당자에게 파일 제출

2015년 ____월 제재금 이의신청 내역서

이의신청기관 : 000000

일련 번호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부과 유형	정보 유형	부과 사유	이의신청 여 부	이의신청 내 용	배제사유 코드	증빙 자료
1	홍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연체등정보	등록지연	X	-		
2	박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연체등정보	해제지연	O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오류가 발생했으나 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제	211	붙임 1
3	김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연체등정보	등록지연	O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연체등정보가 일괄 해제되었으나 회생재권에 포함되지 않아 소급 재등록	621	붙임 2
1	조갑동	000000-00000000	지연분	개인대출정보	등록지연	O	채권양수일(0000년 00월 00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711	붙임 3
1	조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채무보증정보	해지지연	X	-		
"	"	"	"	"	"	"	"	"	"
1	홍갑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연체등정보	등록취소	O	착오등록 건을 1개월 내에 등록취소	812	붙임 4
2	서갑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연체등정보	등록금액 정정	O	등록금액 단위오류를 오류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	813	붙임 5
3	이길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연체등정보	해제사유발생일 정정	O	해제사유발생일 착오등록 건을 기록보존기간 종료 전에 정정	814	붙임 6
1	이갑동	000000-00000000	변동분	개인대출정보	등록취소	O	사망자의 신용정보를 등록취소	866	붙임 7
1	최길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채무보증정보	등록취소	O	착오등록 건을 1개월 내에 등록취소	812	붙임 8
"	"	"	"	"	"	"	"	"	"



종합신용정보집중 기관에서 송부하는 정보이며,
송부한 정보와 동일하게 기입

※ 동 내역서의 순서는 예정부과된
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3 이의 신청

2015년 ____월 제재금 이의신청 내역서

이의신청기관 : 000000

일련 번호	성명 (업체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부과 유형	정보 유형	부과 사유	이의신청 여부	이의신청 내용	배제사유 코드	증빙 자료
1	홍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연체등정보	등록지연	X	-		
2	박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연체등정보	해제지연	O	전산프로그램 개발에 따라 오류가 발생했으나 개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제	211	붙임 1
3	김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연체등정보	등록지연	O	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라 연체등정보가 일괄 해제되었으나 회생제권에 포함되지 않아 소급 재등록	621	붙임 2
1	조갑동	000000-00000000	지연분	개인대출정보	등록지연	O	채권양수일(0000년 00월 00일)로부터 3개월 이내 등록	711	붙임 3
1	조길동	000000-00000000	지연분	채무보증정보	해지지연	X	-		
"	"	"	"	"	"	"	"	"	"
1	홍갑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연체등정보	등록취소	O	착오등록 건을 1개월 내에 등록취소	812	붙임 4
2	서갑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연체등정보	등록금액 정정	O	등록금액 단위오류를 오류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정	813	붙임 5
3	이길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연체등정보	해제사유발생일 정정	O	해제사유발생일 착오등록 건을 기록보존기간 종료 전에 정정	814	붙임 6
1	이갑동	000000-00000000	변동분	개인대출정보	등록취소	O	사망자의 신용정보를 등록취소	866	붙임 7
1	최길동	000000-00000000	변동분	채무보증정보	등록취소	O	착오등록 건을 1개월 내에 등록취소	812	붙임 8
"	"	"	"	"	"	"	"	"	"

제재금 부과와 관련된 이의신청(제재금 배제기준에 포함)이 있으면 “O” 으로, 이의가 없으면 “X” 로 기입

배제사유코드는 신용정보제재금 부과기준(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내용은 핵심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할 것



3 이의 신청

- 이의신청 서류는 공문, 이의신청 내역서, 입증자료로 구성됨
 - ① 공문 : 제재금 부과 대상 통보에 대한 회신공문을 개별 금융기관의 고유 양식으로 송부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표시 금지 또는 부분 마스킹 처리)
 - ② 이의신청 내역서 : 이의제기 핵심내용을 간략 · 이해 가능하게 기재
 - ③ 입증자료 : 이의제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서류만을 제출
- 입증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① 배제내용 : 제재금 부과기준상 배제내용에 해당된다는 사실관계 확인 증빙 필요
ex) 회생계획 인가폐지로 인한 소급재등록(배제코드 : 625)의 경우 인가 폐지된 리스트를 증빙자료로 제출, 채권 양수로 인한 소급재등록(배제코드 : 711)의 경우 채권 양수 계약서 및 제재금 대상이 채권양수 목록에 존재하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② 유예기간 : 유예기간 내에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는 기준일 자료 증빙 필요
ex) 신용정보 등록 시 오류 통보된 건을 재등록(배제코드 : 311)의 경우 오류통보된 내역(신용정보 주체 및 오류통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착오로 정보를 삭제하고 재등록(배제코드 : 811)의 경우 업무착오가 발생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4 제재금 심사

- 이의신청한 내역을 바탕으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대부업 제재금 담당자가 제재금 심사 실시
- 증빙자료 미비시 수시로 해당 금융기관에 자료 제출 요청 예정
- 금융기관은 추가 자료만 암호화하여 자료 송수신 담당자를 수신인으로 설정하여 통합업무시스템 비정규파일송수신을 통해 업로드(파일 암호화)
- 제재금 심사가 완료되면, 담당자가 유선으로 확정부와 내역 통보

5 확정 부과

- 확정 부과 공문 및 확정 부과된 제재금의 지로통지서 송부
- 만약 확정 부과 통보된 내역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확정부와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이의신청 가능(동 기간 경과시 이의신청 절차 종료)
- 최종 이의신청의 절차 및 형식은 기존 이의신청과 동일
- 제재금 심사 절차 역시 동일하며, 심사 결과 제재금 배제 건이라고 판단 시 금융기관으로 확정 부과된 제재금이 철회됨

6 이의신청 절차 종료



7 실무 유의사항

구분	거래의 발생	거래의 변경	거래의 종료
신용정보 처리내용	등록	• 정정 - 금액 - 사유발생일 등 • 취소(등록, 해제) - 착오등록 - 채무부존재소송 - 양수채권 환매 - 약정 취소 - 사망 등	해지, 해제
가계당좌(당좌) 예금 개설 정보	개설		해지
신용카드 발급정보	발급		해지
개인대출정보	•대출약정(연대보증시 보증정보 발생) •채무자 변경(채무 인수) •채권 양수, 채권 양도 취소 •파산면책 취소 또는 회생면책 폐지		•상환완료(관련 채무보증정보의 해지 또는 관련 연체 등 정보의 해제) •채무자변경(채무 인계) •채권 양도 • 파산면책 결정 또는 회생면책 결정
개인채무보증정보	•채무보증약정 •보증인 변경 •채권 양수, 채권 양도 취소 •보증인의 파산면책 취소 및 회생면책 취소 (주채무자의 면책 취소와는 무관)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등의 상환 완료 •보증인 변경 •채권 양도 •보증인의 파산면책 결정 및 회생면책 결정 (주채무자와의 면책과는 무관)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채권 양수, 채권 양도 취소 •파산면책 · 회생 · 신용회복지원의 취소 · 폐지 · 실효		•해당 연체사유 해소(개인대출정보 해지와 무관할 수 있음) •해권 포기 · 감면 · 면제 · 유예, 개별 신용회복 •채권 양도 •파산면책 · 회생 · 신용회복지원 결정
신용공여 (담보, 한도 및 법인 채무보증, 채무인수 약정은 월말 기준)	•신용공여 약정, 채무자 변경(채무 인수), 채권 양수 및 양도 취소, 개인사업자의 파산면책 취소 및 회생면책 폐지 등의 경우 잔액 집중 •단기연체(원금 및 이자 연체)는 연체기산일로부터 10일이 되는 날을 기준일자로 집중하며,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의 파산면책 취소, 회생 폐지 등의 경우 연체 잔액 집중		•상환 완료, 채무자 변경(채무인계), 채권 양도 및 양수 취소, 개인사업자의 파산면책 및 회생면책 결정 등의 경우 잔액(0) 집중 •단기연체는 상기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사업자의 파산면책 결정, 회생면책 결정, 신용회복지원 결정 등의 경우 잔액(0) 집중



7 실무 유의사항

- 금융거래 발생시 즉시 집중할 것! [처리 지연시 제재금만 가중]
- 오류가 확인되면 즉시 처리할 것! [처리 지연시 제재금만 가중]
- 신용정보 집중 후 반드시 전송결과를 확인할 것! [불필요한 제재금 발생 예방]
 - 온라인의 경우 당일 확인 가능
 - 일괄처리방식의 경우 익일 확인 가능
- 변동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적극 고려할 것!
 - 이의신청 없으면 그대로 부과 확정 (제재금 : 건당 100만원)
- 제재금 확정부과 통보시 최종 확인할 것!
 - 확정부과 공문 시행일로부터 30일 경과시 모든 이의신청절차 종료
- 확신이 없으면 문의하라! (☎02-3705-5296)



7 실무 유의사항

- 제재금 부과 주요사례를 숙지하라!

- ① 특수채권 편입 시 반드시 정정처리
- ② 등록금액(사유발생일)의 정정은 정확한 금액(일자)으로 처리시만 가능
- ③ 등록 후 채무부존재소송시 연체 등 정보 1개월내 등록취소('77') 유의
- ④ 채권 양수도 시 약정서 등의 양수도 효력일 확인하여 3개월내 처리
- ⑤ 해지, 해제건의 등록취소('77') 주의



1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종류

- 등록·해지 등의 누락 제재금

대상	기준	제재금	사유코드	비고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연체포함), 지급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 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 기간 포함) 정보 등록	1억원 이하	2만원	231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10억원 이하	5만원	232	
	100억원 이하	10만원	233	
	100억원 초과	20만원	234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1억원 이하	2만원	231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10억원 이하	5만원	232	
	100억원 이하	10만원	233	
	100억원 초과	20만원	234	
대상기업체정보 등록	4주 연속	2만원	251	-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 월말여신 제외 - 구간별 기간경과 시 해당 제재금을 각각 부과함
	8주 연속	5만원	252	
	12주 연속	20만원	253	
	12주 초과 연속	고의·부적절		



1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종류

- 등록·해지 등의 지연 제재금

대상	지연일수	제재금	사유코드	비고
-평일보 등록 -말일보 등록 -월보 등록 -기업어음거래정보 등록	1영업일 이내	2만원	131	기준일자별 부과
	3영업일 이내	4만원	132	
	6영업일 이내	8만원	133	
	6영업일 초과	10만원	134	



2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발생

- 등록 내용의 부정확 제재금

구분	대상	기준	제재금	사유코드	비고
개인기업 및 법인에 관한 대출(연체 포함), 지급보증, 유가증권, 담보, 한도, 법인채무보증 및 채무인수약정등의 신용공여(신용공여기간 포함) 정보등록의 부정확	기록보존중인 기업신용공여정보(기업어음거래정보 포함)의 등록·정정	5건 이하	3만원	311	등록대상(개인기업 및 법인)별 부과
		10건 이하	5만원	312	
		20건 이하	7만원	313	
		50건 이하	10만원	314	
		100건 이하	20만원	315	
		200건 이하	30만원	316	
		500건 이하	50만원	317	
		1,000건 이하	80만원	318	
		1,000건 초과	100만원	319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정보란?
 - 금융기관이 신용공여를 제공한 기업에 대한 업체 정보
(법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등)
 -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일보 또는 월보(DD9011 또는 DM9011) 집중 시,
해당 기업의 식별번호가 **대상기업체 정보(DC9011)**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기업신용공여정보 처리 및 조회 가능

대상기업체
정보

일보 또는 월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처리 및 조회 가능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이란?

-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정보(DD9011, DM9011) 집중 시,
보고대상 기업의 식별번호(법인(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대상기업체 정보에 미등록(또는 불일치)일 경우에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발생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이 발생시, 해당 기업의 신용공여정보 처리 불가
누락이 4주 이상 지속 시 제재금이 부과되며, 누락 오류 조치 시까지 계속적·누적적 부과

대상기업체
정보 미등록

일보 또는 월보

기업신용공여정보 처리 불가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발생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확인 방법

-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정보(DD9011, DM9011) 집중 시, 대상기업체 정보 등록 누락 건이 있다면 은행연합회는 **DD9133 또는 DM9133으로 대상기업체 등록누락 오류(901코드) 전송**
- 또한 매주 토요일마다 금융기관별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분을 취합하여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명세서(DC9144) 전송**

(누락명세서는 [통합업무시스템(nkfb.cif.or.kr)-기업정보-대상기업체-대상기업체 누락 분 조회]에서도 확인 가능)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명세서 예시

기준일자	기관코드	기관명	차주번호	차주구분	여신최근 등록일자	보고서 코드	계정과목	금액	여신최초 등록일자	등록 주차수
2015.1.24	AAAA	A 기관	123456 1234567	3	2015.1.20	31	1051	362	2015.1.13	1

☞ 해석 : 1월 24일(토) 기준으로 A기관이 '31번 보고서(DD9011)-법인(3)-법인번호(1234561234567)'을 1월 20일에 등록한(1월 13일 최초보고)하였으나, 해당 법인번호가 대상기업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누락된 기간은 1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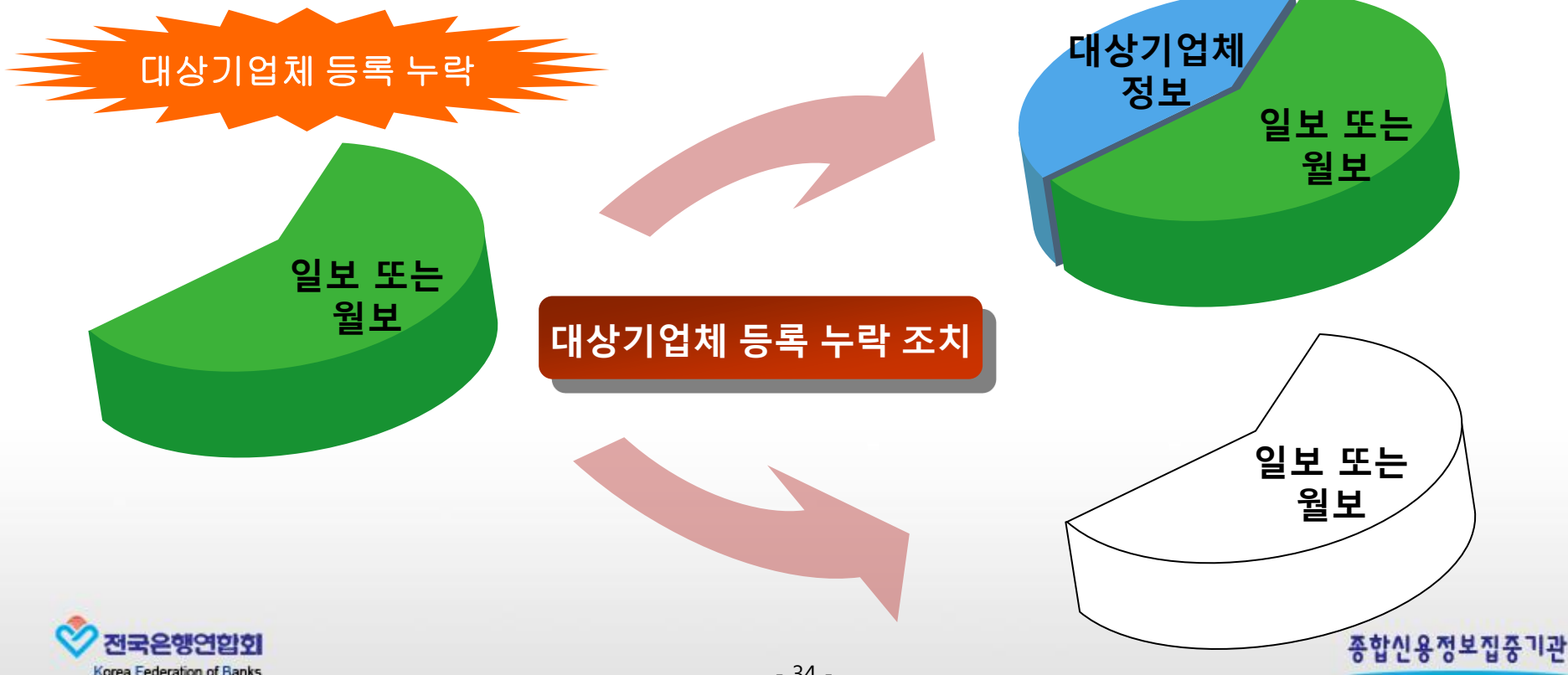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조치 방법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은

일보 또는 월보는 등록되어 있으나, 업체정보가 없기 때문에 발생

☞ 경우에 따라 대상기업체 정보를 등록하거나 일보 또는 월보를 변경하여 조치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조치 방법

예시 ① : 일보 또는 월보의 업체 식별번호(법인A)는 정상 등록되었으나,
관련 기업의 대상기업체정보 미등록인 경우

대상기업체정보
미등록

일보(DD9011)
법인A에 대한 신용공여정보

☞ 대상기업체정보(법인A) 신규 입력
: DC9011 또는 통합업무시스템에서 해당 법인A 신규 등록

대상기업체정보
법인A 신규등록

일보(DD9011)
법인A에 대한 신용공여정보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조치 방법

예시 ② : 일보 또는 월보의 업체 식별번호는 정상 등록되었으나
관련 기업의 대상기업체정보가 오입력 또는 변경전 정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상기업체정보
법인B

일보(DD9011)
법인A에 대한 신용공여정보

법인B는 법인A의
조직변경 전 식별
번호로 사업자등록
번호는 동일함

☞ 대상기업체정보 법인B를 법인A로 변경 입력
: DC9011 또는 통합업무시스템에서 해당 법인B를 A로 변경

대상기업체정보
법인A로 변경

일보(DD9011)
법인A에 대한 신용공여정보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조치 방법

예시 ③ : 기업신용공여정보 집중 대상이 아닌 정보를 일보로 등록한 경우

대상기업체정보
법인A

일보(DD9011)
개인A에 대한 신용공여정보

개인(사업자 아님)에
대한 여신정보는
기업신용공여정보
등록 대상이 아님

👉 최근 집중 가능한 일보로 해당 정보를 취소

(해당 식별번호에 대해 평일보는 잔액 등 '0'으로 보고하며, 말일보는 해당 정보가 포함되지 않게 보고)

대상기업체정보
법인A

일보(DD9011)
개인A에 대해 기존 보고한 계정과목 으로 잔액 '0' 보고



3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제재금

- 대상기업체 등록 누락 조치 방법

예시 ④ : 일보 또는 월보에 보고대상 식별번호를 오입력하였거나 잘못된(변경전) 식별번호로 보고한 경우

대상기업체정보
법인A

일보(DD9011)
법인B에 대한 신용공여정보

법인B는 법인A의
조직변경 전 식별
번호로 사업자등록
번호는 동일함

👉 최근 집중 가능한 일보로 해당 정보를 취소하고 올바른 식별번호로 보고
또한 기존 일보 또는 월보에 대해 실시간 정정처리 필요(부정확 제재금 참고)

대상기업체정보
법인A

일보(DD9011)
①법인B에 대해 기 존 보고한 계정과목 으로 잔액 '0' 보고 ②법인A에 대한 신 용공여정보 추가



법인B로 보고한 일보
또는 월보가 이미 처리되
었다면(집중기한경과)
'실시간정정처리'로 해당
기준일에 법인A에 대해
신규등록 필요



4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지연 제재금

- 지연 제재금이란?

- 금융기관은 기준일별로 기업에게 제공한 신용공여에 대한 내역(금액, 과목 등)을 여신보고서인 DD9011(평일보, 말일보)와 DM9011(월보)로 보고하며 집중기한이 있음
- 만약, 집중기한이 경과하고 집중할 경우 지연제재금이 부과됨

* 다만 집중기한 내 집중한 보고서에 한하여 해당 기준일의 보고서는 정정기간 1영업일이 추가로 있음

일일여신:평일보

31번 보고서

DD9011

월중 영업일 기준으로 보고

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

일일여신:말일보

31번 보고서

DD9011

월말 영업일을 기준으로 보고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일일여신:말일보

32,33,34번 보고서

DM9011

월말 영업일을 기준으로 보고

기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

기간 경과 보고 시 지연제재금 발생



4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지연 제재금

- 지연 제재금 사례

예시 ① : 5월 4일 기준일의 평일보를 5월 7일에 보고

☞ 집중기한내에 집중하였으므로 지연제재금 대상 아님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기준일	휴일		보고		휴일	휴일	

예시 ② : 5월 4일 기준일의 평일보를 5월 7일에 보고 후, 수정사항이 있어 8일에 재보고

☞ 집중기한내에 보고한 보고서를 정정기한에 보고하였으므로 지연제재금 대상 아님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기준일	휴일		보고	재보고	휴일	휴일	



4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지연 제재금

- 지연 제재금 사례

예시 ③ : 5월 4일 기준일의 평일보를 5월 8일에 보고

☞ 집중기한 경과 후 보고하였으므로 지연제재금 대상(집중한 보고서는 처리 가능)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기준일	휴일			보고	휴일	휴일	

예시 ④ : 5월 4일 기준일의 평일보를 5월 11일에

☞ 집중기한 경과 후 보고하였으므로 지연제재금 대상(집중한 보고서는 처리 불가)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기준일	휴일				휴일	휴일	보고



5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이란?

- 기업신용공여정보는 보고서를 기준일별 집중기한 내에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므로 이미 처리된(집중기한이 경과 된) 보고서는 정정 재보고 불가
- 만약 이미 처리된 특정 기준일의 **일일여신 및 월말여신** 금액 및 과목 등이 부정확하거나 소급변경 등으로 인해 기준일별 · 보고서별 · 차주별로 **정정(삭제,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은행연합회로 **공문으로 정정처리 요청**하며 **부정확 제재금**이 발생됨
(☎02-3705-5572, 5233)
기록보존기간중인 보고서만 정정처리 가능
- **정정처리의 경우, 반드시 집중가능한 기준일의 일일여신에도 해당 내용 반영하여 보고해야함(그렇지 않으면, 계속 부정확한 정보가 일일여신에 반영되어짐)**



5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 사례

예시 ① : 5월 11일 현재, 기 보고한 5월 6일 기준일자 일보 중 일부 내역 금액이 오류일 경우

☞ 5월 6일 기준 일보 집중기한은 11일까지이므로

실시간정정처리가 아니라 6일자 일보를 정정하여 재보고

이 경우, 부정확 제재금 대상 아님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휴일	5월 6일 기준 일보 오등록			휴일	휴일	현재 (5월 4일 기준일 보고서 처리)

6일 기준일자 집중기한

6일 기준일자
정정 재집중기한

11일 현재, 6일 기준일자
재집중기한 내이므로
실시간 정정처리가 아닌
6일 기준일 일보 재보고



5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 사례

예시 ② : 5월 11일 현재, 기 보고한 5월 4일 기준일자 일보 중 일부 내역이 **오등록**되었으며 해당 오등록분을 5월 6일 기준 일보에 정정하여 보고(신규,변경,삭제)한 경우

☞ 오등록분이 이미 일보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5월 4일 기준일 일보만 실시간 정정처리(신규,변경,삭제)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4일 기준 일보 일부 내역 오등록	휴일	5월 6일 기준 일보에 오등록분 정정하여 보고			휴일	휴일	현재 (5월 4일 기준일 보고서 처리)

5월 4일 기준일자 일보
실시간 정정처리 필요



5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

- 부정확 제재금 사례

예시 ③ : 5월 11일 현재, 기 보고한 5월 4일 기준일자 일보 중 일부 내역이 오등록되고 해당 오등록분을 일보(6,7,8기준일자)에 정정반영하여 보고한적이 없는 경우

☞ 5월 4일 기준일 일보에 대해 실시간 정정처리(신규, 변경, 삭제)하고 최근 집중가능한 일보에 정정내용 포함하여 재집중

5월 4일	5월 5일	5월 6일	5월 7일	5월 8일	5월 9일	5월 10일	5월 11일
5월 4일 기준 일보 일부 내역 오등록	휴일	5월 6일 기준 일보 보고 (오등록 정정분 미포함)			휴일	휴일	현재 (5월 4일 기준일 보고서 처리)

5월 4일 기준일자 일보
실시간 정정처리 필요

5월 6일 기준일자 일보
(최근 집중가능한 일보)에
정정내용 포함하여 재집중



6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업무처리

- 제재금 업무 처리 흐름

① (금융기관) 제재금 부과 사유 발생

② (은행연합회) 매월 제재금 명세 취합 후 예정부과

③ (금융기관) 배제사유 있다면 공문으로 이의신청

④ (은행연합회) 제재금 심사 후 확정부과

⑤ (금융기관) 확정부과에 대해 불복 시 재심 신청

⑥ (은행연합회) 재심에 대한 심사 후 결과 통지



7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 이의신청

- 기업신용공여정보 제재금 이의신청 시 유의 사항

- ① 이의신청은 반드시 『공문(직인날인)+이의신청내역서+관련증빙』의 구성으로 해당 제재금 담당자에게 통합업무시스템(비정규파일송수신) 또는 우편 전송
- ② 이의신청 기한 엄수
확정부과에 대한 재심신청의 경우, 부과일로부터 1개월 이내까지만 재심 가능
- ③ 이의신청 시 관련증빙은 꼭 **필요한 자료만** 송부
또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뒷자리(7자리)는 마스킹하여 송부
- ④ 기업신용공여정보는 기준일별·보고서별 처리되는 특징으로 인하여
배제사유가 제한적이므로 이의신청 시 **배제코드 주의** 필요
(배제사유 중 기업신용공여정보도 해당되는 사유들은 배제기준에 따로 언급되어 있음)
- ⑤ 단순 전산 오류, 단순 실수, 업무상 착오,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오류 등은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⑥ 중앙회·협회등을 통하여 정보를 전송하는 기관들은 이의신청 시 반드시 **해당 중앙회·협회등과도 협의** 필요

감사합니다

